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329

제출연월일: 2024. 11. 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 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원본을 종이문서 외 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 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 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원본을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.

제27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항만시설적합확인서등의 원본을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무소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	제12조(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	4
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	
박보안증서(이하 "국제선박보	
안증서등"이라 한다)의 원본을	
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.	
<후단 신설>	이 경우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
	원본을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
	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
	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
	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에서
	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
	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
	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.
제27조(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	제27조(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
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	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
부 등) ① ~ ③ (생 략)	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	4
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	
적합확인서(이하 "항만시설적	
합확인서등"이라 한다)의 원본	
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	
한다. <후단 신설>	이 경우 항만시설적합확인

서등의 원본을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사무소에서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.